

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11. 6.(목)

제안자 : 김정복, 송은섭 의원의

1. 수정이유

도의 행정기구에 없는 문서과의 명칭을 총무과로 하고, 공인의 폐기와 관련 혼용하여 쓰고있는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안 제8조 제3항중 “문서과” → “총무과”로
- 안 제16조 제2항중
“반납된 공인” → “이관 받은 공인”으로 수정

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제3항중 “문서과”를 “총무과”로 한다.

안 제16조 제2항중 “반납된 공인”을 “이관 받은 공인”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1조~제7조 (생략) 제8조 ①~② (생략) ③전자판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판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, 그 소속 행정기관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판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	제1조~제7조 (생략) 제8조 ①~② (생략) ③전자이미지판인을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. 이하 이문에서 같다)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판인대장에 의하여 문서과에 등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판인대장을 관리하며, 전자이미지판인은 정보통신과장이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판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.	제1조~제7조 (개정안과 같음) 제8조 ①~② (생략) ③ _____ _____ _____ _____충무과 _____충무 과 _____ _____ _____
제16조(공인외폐기)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충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 ②충무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, 반납공인은 소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.	제16조(공인외폐기) ①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충무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 ②충무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폐기공인란에 인영 및 기록사항을 기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,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.	제16조(공인외폐기) ①(개정안과 같음) ②_____이관 받은 공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